

강원도립대학교 인성인증에 관한 운영규정

(제정) 2017-06-30 규정 제476호

(개정) 2022-04-25 규정 제602호

(개정) 2023-12-01 규정 제66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 대한 인성핵심역량을 인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22.04.25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인성인증이라 함은 인성 및 봉사 교과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의 교과 영역과 제4조의 공통참여 및 자율참여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 Pass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 그 인성함양에 대한 노력을 인정함을 말한다. <개정 2022.4.25., 2023.12.01.>

제3조(인증영역) ① 인성 및 봉사 교과의 핵심 덕목 및 핵심 덕목별 핵심역량이 매칭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증한다. <개정 2022.04.25.>

② 핵심덕목은 책임, 배려, 소통 및 협력 등이며, 핵심덕목별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.

[신설 2022.04.25.]

1. 책임 : 자기관리 역량 [신설 2022.4.25.]
2. 배려 : 갈등관리 역량 [신설 2022.4.25.]
3. 소통 : 의사소통 역량 [신설 2022.4.25.]
4. 협력 : 공동체 역량 [신설 2022.4.25.]

제4조(인증위원회) ① 인성인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성인증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4.25.>

③ 인증위원회는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교육혁신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은 전임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내외로 정한다. [신설 2022.4.25.]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[신설 2022.4.25.]

⑤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 <개정 2022.4.25.>

1. 개설 예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성덕목 및 핵심역량 매칭 [신설 2022.4.25.]
2. 인성인증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
3. 인성인증서 수여에 관한 자격 심사
4. 기타 인성인증에 필요한 사항

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인증 평가 시기) 인증 대상자의 인성 및 봉사 활동에 대한 자료는 매학기 말에 인성 및

봉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.

제6조(인증 평가 방법) ① 인증 대상자는 ‘인성 및 봉사 교과에 관한 운영규정’에서 규정하는 학점이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22.4.25., 2023.8.31.>

1. 인성 및 봉사 성적표 1부

2. 인성학기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1부 <개정 2023.12.01.>

제7조(인성인증서) ① 인성인증 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 인증영역의 인성을 인증하는 별표1의 인성인증서를 수여한다.

② 인성인증서에는 인성인증 대상자가 습득한 핵심덕목과 이에 따른 핵심역량이 표기된다.

<개정 2022.4.25.>

③ 삭제 <개정 2022.4.25.>

제8조(인성인증 수료증) 인성인증서가 수여되는 학생에게는 인성 및 봉사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별표2의 수료증이 발급된다. <개정 2022.4.25.>

제9조 삭제 <2023.12.01.>

부칙(2022. 4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 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12. 01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